

화학물질안전원

수신

(경유)

제목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항목				
심의결과				

2.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